

제2541호
2017. 10. 1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웅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7-84호 :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2
제2017-85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4
제2017-86호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5
제2017-87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6
● 공 고	
제2017-69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	7
제2017-703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제2017-704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제2017-70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	20
제2017-70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4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84호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정비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사업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591호(1984.10.10)로 사업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79호(2013.6.13.),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55호(2017.7.20.)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21호(2014.3.12.)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29호(2015.5.13.),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22호(2017.3.29.)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우리구 서소문동 120-13번지 일대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13번지 일대 / 1,191.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센트럴디벨롭먼트 / 상진공영(주) (대표이사 최대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길 36
4. 준공인가일 : 2017. 9. 28.
5. 준공인가 내역
 - 가. 토 지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비 고
		합 계	도 로		
			중로(1-201)	중로(2-192)	
1,191.8	968.4	223.4	209.5	13.9	

나. 건축시설

구 분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584.43㎡	건폐율 : 60.35%
연 면 적	14,134.90㎡	용적률 : 1,109.58%
층 수	지하5층, 지상23층	높이 : 99.8m
용 도	숙박시설(관광호텔, 근린생활시설)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지정

6.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사항은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본 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7. 관련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4) 비치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8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1길 55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58-3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4길 13	2017.10.11.	수표로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수표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55-1, 155-22 155-3, 155-8, 156-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93	2017.10.11.	퇴계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의 호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86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08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변경전	변경후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신당동 421-5	동호로 206	동호로 208	2017.10.11.	동호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한강변의 옛 지명인 동호에서 유래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87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30-7 외 1건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30-7	2017.10.11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9길 6	2017.10.11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697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50선」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건물의 냉난방온도 관리」 규정 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 없는 「건물의 냉난방온도 관리」 규정 삭제: 제5장(제15조~제19조) 삭제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둘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 상위법 「에너지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건물의 냉난방온도 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앴.

나.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 추가: 제26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 정비
-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환경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3396-5624, FAX: 3396-8765, 메일: yej742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5조~제19조)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정지원 등) ④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건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 제15조(대상 건축물)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냉·난방 온도를 일정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냉·난방 에너지 관리 건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 기준, 점검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온도관리기준) 관리대상 건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17조(점검방법)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	(삭제)

현 행	개 정 안
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재정지원 등)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26조(재정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u>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다.</u>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03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재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재단의 공유재산을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해당 규정 삭제 권고

2. 주요내용

- ☐ 법률의 위임 없이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는 **규정 삭제**
-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02-3396-4603, FAX 02-3396-8621, oje8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관광과(02-3396-460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04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예그린 스페이스 대관 신설, 문화시설 명칭 변경 및 사용료 일반기준, 개별기준 구체적으로 규정 개정
- 대관료 인상을 통한 현실화
 - 2010.12.29. 조례 개정 이후 7년여 동안 정해진 기준 금액으로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함
 - 물가상승률 및 유사 공연장의 사용료를 참조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대관료 인상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일반기준 구체적으로 명시화

- 기본 사용료 평일/야간 기준 구체적으로 표현
 - (현행) 평일 → (변경) 평일 주간(월요일~금요일, 09:00~18:00)
 - (현행) 야간 → (변경) 평일 야간

○ 기본 사용 시간 및 사용료 횟수, 오전/오후/야간/심야 시간 기준 추가

나. 문화시설 명칭 변경 및 예그린 스페이스 대관 신설 등

- 충무갤러리 명칭을 “갤러리”로, 컨벤션센터 명칭을 “컨벤션홀”로 각각 변경
- 예그린 스페이스 대관 신설

구 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기준	대 상	비 고
예그린 스페이스	150,000	4시간	전시, 공연	부대설비 별도
	200,000	8시간		

다. (재)중구문화재단 경영합리화 운영 계획 방침(대관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른 대관료 인상 및 사용기준 구분

- 대극장 순수예술 공연 기본대관료 인상
 - (현행) 1,250,000원 → (변경) 1,500,000원
- 대극장 대중 및 종합예술 공연 기본대관료 인상 및 사용기준 구분
 - (현행) 2,500,000원 → (변경) 2,500,000원(평일 주간)
→ (변경) 3,000,000원(토·일·공휴일, 평일야간)
- 중극장 공연 기본대관료 인상
 - (현행) 500,000원 → (변경) 500,000원(평일 주간)
→ (변경) 600,000원(토·일·공휴일, 평일야간)
- 컨벤션홀 기본이용료 인상
 - (현행) 200,000원 → (변경) 220,000원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청 경공로 17 전화: 02-3396-4603, FAX 02-3396-8621, oje8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관광과(02-3396-460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화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등(제14조 관련)

1. 사용료 일반기준

- 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 주간(월요일~금요일, 09:00~18:00)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 나. 기본 사용 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하며, 사용료는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단, 갤러리는 1일 8시간으로 한다)
- 다. 토·일·공휴일과 평일 야간 사용료는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에 30%를 할증할 수 있다.
- 라. 개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 이내, 입장료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바. 오전 : 09시~12시, 오후 : 13시~18시, 야간 : 19시~22시, 심야 : 23시~02시

2. 문화시설 사용료 개별기준

가. 공연장 및 갤러리 대관료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기준	대상	비고
대극장	순수예술	공 연	1,500,000	1회 3시간	클 래 식	냉 · 난방,음향장비, 조명, 영상장비 등 포함
		리허설	625,000	1회 3시간		
	대중 및 종합예술	공 연	2,500,000	1회 3시간 평일 주간	뮤지컬, 무용, 대중콘서트, 오페라 등	
			3,000,000	1회 3시간 토 · 일 · 공휴일 평일 야간 (리허설 포함)		
		리허설	1,25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 · 철수	2,500,000	1회 3시간		
중극장	공 연		500,000	1회 3시간 평일 주간	공 연	
			600,000	1회 3시간 토 · 일 · 공휴일 평일 야간 (리허설 포함)		
	리허설 및 세팅		25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 · 철수		500,000	1회 3시간		
	공 연		400,000	1회 3시간		
소극장	리허설 및 세팅		200,000	1회 3시간	공 연	
	심야 세팅 · 철수		400,000	1회 3시간		
	갤러리		400,000	1일 8시간		회화, 조각 등 전시
에그린 스페이스			150,000	4시간	전시, 공연	부대설비 별도
			200,000	8시간		

나.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분	대상	기본이용료	기본사용시기준	비고
피아노	스타인웨이	70,000	1회 4시간	
	야 마 하	40,000		
부대시설	컨벤션홀	220,000		
	리허설룸	100,000		
	공연연습실	200,000		
	개인연습실	50,000		

다. 비고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등(제14조 관련)					[별표]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등(제14조 관련)																																																																																																																												
1. 사용료 일반기준					1. 사용료 일반기준																																																																																																																												
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 주간(월요일~금요일, 09:00~18:00)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나. 토요일공휴일과 야간 사용료는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에 30%를 할증할 수 있다.					나. 기본 사용 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하며, 사용료는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단, 갤러리는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 개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 토요일공휴일과 평일 야간 사용료는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에 30%를 할증할 수 있다																																																																																																																												
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 이내, 입장료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라. 개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문화시설 사용료 개별기준					2. 문화시설 사용료 개별기준																																																																																																																												
가. 공연장 및 충무아트센터 대관료					가. 공연장 및 충무아트센터 대관료																																																																																																																												
(단위: 원)					(단위: 원 / 부세 별도)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기본대관료</th><th>기본사용기준</th><th>대상</th><th>비고</th></tr><tr><td rowspan="5">대극장</td><td rowspan="2">순수예술</td><td>공연</td><td>1,250,000</td><td>1회 3시간</td><td rowspan="2">클래식</td></tr><tr><td>리허설</td><td>625,000</td><td>1회 3시간</td></tr><tr><td rowspan="3">대중 및 종합예술</td><td>공연</td><td>2,500,000</td><td>리허설 및 오후공연 포함</td><td rowspan="3">뮤지컬, 무용, 대중콘서트, 오페라 등</td></tr><tr><td>리허설</td><td>1,250,000</td><td>1회 3시간</td></tr><tr><td>심야 세팅·철수</td><td>2,500,000</td><td>1회 3시간</td></tr><tr><td rowspan="3">중극장</td><td rowspan="3">공연</td><td>리허설 및 세팅</td><td>500,000</td><td>1회 3시간</td><td rowspan="3">공연</td></tr><tr><td>리허설 및 세팅</td><td>250,000</td><td>1회 3시간</td></tr><tr><td>심야 세팅·철수</td><td>500,000</td><td>1회 3시간</td></tr><tr><td rowspan="3">소극장</td><td rowspan="3">공연</td><td>리허설 및 세팅</td><td>400,000</td><td>1회 3시간</td><td rowspan="3">공연</td></tr><tr><td>리허설 및 세팅</td><td>200,000</td><td>1회 3시간</td></tr><tr><td>심야 세팅·철수</td><td>400,000</td><td>1회 3시간</td></tr><tr><td colspan="2">충무갤러리</td><td>400,000</td><td>1일</td><td>회화, 조각 등 전시</td><td></td></tr></table>					구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기준	대상	비고	대극장	순수예술	공연	1,250,000	1회 3시간	클래식	리허설	625,000	1회 3시간	대중 및 종합예술	공연	2,500,000	리허설 및 오후공연 포함	뮤지컬, 무용, 대중콘서트, 오페라 등	리허설	1,25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2,500,000	1회 3시간	중극장	공연	리허설 및 세팅	500,000	1회 3시간	공연	리허설 및 세팅	25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500,000	1회 3시간	소극장	공연	리허설 및 세팅	400,000	1회 3시간	공연	리허설 및 세팅	2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400,000	1회 3시간	충무갤러리		400,000	1일	회화, 조각 등 전시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기본대관료</th><th>기본사용기준</th><th>대상</th><th>비고</th></tr><tr><td rowspan="5">대극장</td><td rowspan="2">순수예술</td><td>공연</td><td>1,250,000</td><td>1회 3시간</td><td rowspan="2">클래식</td></tr><tr><td>리허설</td><td>625,000</td><td>1회 3시간</td></tr><tr><td rowspan="3">대중 및 종합예술</td><td>공연</td><td>2,500,000</td><td>1회 3시간 평일 주간</td><td rowspan="3">뮤지컬, 무용, 대중콘서트, 오페라 등</td></tr><tr><td>리허설</td><td>1,250,000</td><td>1회 3시간</td></tr><tr><td>심야 세팅·철수</td><td>2,500,000</td><td>1회 3시간</td></tr><tr><td rowspan="3">중극장</td><td rowspan="3">공연</td><td>리허설 및 세팅</td><td>500,000</td><td>1회 3시간 평일 주간</td><td rowspan="3">공연</td></tr><tr><td>리허설 및 세팅</td><td>250,000</td><td>1회 3시간</td></tr><tr><td>심야 세팅·철수</td><td>500,000</td><td>1회 3시간</td></tr><tr><td rowspan="3">소극장</td><td rowspan="3">공연</td><td>리허설 및 세팅</td><td>400,000</td><td>1회 3시간</td><td rowspan="3">공연</td></tr><tr><td>리허설 및 세팅</td><td>200,000</td><td>1회 3시간</td></tr><tr><td>심야 세팅·철수</td><td>400,000</td><td>1회 3시간</td></tr><tr><td colspan="2">갤러리</td><td>400,000</td><td>1일 8시간</td><td>회화, 조각 등 전시</td><td></td></tr><tr><td colspan="2" rowspan="2">에그린 스페이스</td><td>150,000</td><td>4시간</td><td rowspan="2">전시, 공연</td><td rowspan="2">부대설비 별도</td></tr><tr><td>200,000</td><td>8시간</td></tr></table>					구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기준	대상	비고	대극장	순수예술	공연	1,250,000	1회 3시간	클래식	리허설	625,000	1회 3시간	대중 및 종합예술	공연	2,500,000	1회 3시간 평일 주간	뮤지컬, 무용, 대중콘서트, 오페라 등	리허설	1,25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2,500,000	1회 3시간	중극장	공연	리허설 및 세팅	500,000	1회 3시간 평일 주간	공연	리허설 및 세팅	25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500,000	1회 3시간	소극장	공연	리허설 및 세팅	400,000	1회 3시간	공연	리허설 및 세팅	2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400,000	1회 3시간	갤러리		400,000	1일 8시간	회화, 조각 등 전시		에그린 스페이스		150,000	4시간	전시, 공연	부대설비 별도	200,000	8시간
구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기준	대상	비고																																																																																																																												
대극장	순수예술	공연	1,250,000	1회 3시간	클래식																																																																																																																												
		리허설	625,000	1회 3시간																																																																																																																													
	대중 및 종합예술	공연	2,500,000	리허설 및 오후공연 포함	뮤지컬, 무용, 대중콘서트, 오페라 등																																																																																																																												
		리허설	1,25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2,500,000	1회 3시간																																																																																																																													
중극장	공연	리허설 및 세팅	500,000	1회 3시간	공연																																																																																																																												
		리허설 및 세팅	25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500,000	1회 3시간																																																																																																																													
소극장	공연	리허설 및 세팅	400,000	1회 3시간	공연																																																																																																																												
		리허설 및 세팅	2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400,000	1회 3시간																																																																																																																													
충무갤러리		400,000	1일	회화, 조각 등 전시																																																																																																																													
구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기준	대상	비고																																																																																																																												
대극장	순수예술	공연	1,250,000	1회 3시간	클래식																																																																																																																												
		리허설	625,000	1회 3시간																																																																																																																													
	대중 및 종합예술	공연	2,500,000	1회 3시간 평일 주간	뮤지컬, 무용, 대중콘서트, 오페라 등																																																																																																																												
		리허설	1,25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2,500,000	1회 3시간																																																																																																																													
중극장	공연	리허설 및 세팅	500,000	1회 3시간 평일 주간	공연																																																																																																																												
		리허설 및 세팅	25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500,000	1회 3시간																																																																																																																													
소극장	공연	리허설 및 세팅	400,000	1회 3시간	공연																																																																																																																												
		리허설 및 세팅	200,000	1회 3시간																																																																																																																													
		심야 세팅·철수	400,000	1회 3시간																																																																																																																													
갤러리		400,000	1일 8시간	회화, 조각 등 전시																																																																																																																													
에그린 스페이스		150,000	4시간	전시, 공연	부대설비 별도																																																																																																																												
		200,000	8시간																																																																																																																														
나.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원 / 부세 별도)																																																																																																																												
<table><tr><th>구분</th><th>대상</th><th>기본이용료</th><th>기본사용시간</th><th>비고</th></tr><tr><td rowspan="5">부대시설</td><td>스타인웨이</td><td>70,000</td><td rowspan="5">1회 4시간</td><td rowspan="5"></td></tr><tr><td>야마하</td><td>40,000</td></tr><tr><td>컨벤션센터</td><td>200,000</td></tr><tr><td>리허설룸</td><td>100,000</td></tr><tr><td>공연연습실</td><td>200,000</td></tr><tr><td>개인연습실</td><td>50,000</td></tr></table>					구분	대상	기본이용료	기본사용시간	비고	부대시설	스타인웨이	70,000	1회 4시간		야마하	40,000	컨벤션센터	200,000	리허설룸	100,000	공연연습실	200,000	개인연습실	50,000	<table><tr><th>구분</th><th>대상</th><th>기본이용료</th><th>기본사용시간</th><th>비고</th></tr><tr><td rowspan="5">부대시설</td><td>스타인웨이</td><td>70,000</td><td rowspan="5">1회 4시간</td><td rowspan="5"></td></tr><tr><td>야마하</td><td>40,000</td></tr><tr><td>컨벤션홀</td><td>220,000</td></tr><tr><td>리허설룸</td><td>100,000</td></tr><tr><td>공연연습실</td><td>200,000</td></tr><tr><td>개인연습실</td><td>50,000</td></tr></table>					구분	대상	기본이용료	기본사용시간	비고	부대시설	스타인웨이	70,000	1회 4시간		야마하	40,000	컨벤션홀	220,000	리허설룸	100,000	공연연습실	200,000	개인연습실	50,000																																																																																
구분	대상	기본이용료	기본사용시간	비고																																																																																																																													
부대시설	스타인웨이	70,000	1회 4시간																																																																																																																														
	야마하	40,000																																																																																																																															
	컨벤션센터	200,000																																																																																																																															
	리허설룸	100,000																																																																																																																															
	공연연습실	200,000																																																																																																																															
개인연습실	50,000																																																																																																																																
구분	대상	기본이용료	기본사용시간	비고																																																																																																																													
부대시설	스타인웨이	70,000	1회 4시간																																																																																																																														
	야마하	40,000																																																																																																																															
	컨벤션홀	220,000																																																																																																																															
	리허설룸	100,000																																																																																																																															
	공연연습실	200,000																																																																																																																															
개인연습실	50,000																																																																																																																																
다. 비고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재단 야장이므로 정할 수 있다.					다. 비고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문화재단 야장이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0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언이유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최일선 재난현장의 효과적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으로 재난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 보완 개정(안 제5조, 제45조)
-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내용 수정보완(안 제6조, 제7조)
-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신설(안 제15조 ~ 제20조)
-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정 사항 반영(안 제21조 ~ 제38조)
- 마.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규정(안 제39조 ~ 제40조)
- 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55조 ~ 제64조)
-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안전치수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02-3396-6182, FAX: 02-3396-9085, 메일: os102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제1절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중부소방서장
 3. 중부경찰서장, 남대문경찰서장
 4. 구 지역 담당 부대장
 5.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
 6.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7. 구 관할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심의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절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5조(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16조(민관협력위원회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18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9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21조(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2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 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 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3. 대변인 :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다만, 해당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대책본부 편성기준,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사무 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25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다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3조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26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
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2. 기능별 협업부서 국·소장 및 과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0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35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서울특별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8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4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제39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교통 등 대책본부의 분야별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절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제41조(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2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3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

제44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조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8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제49조(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훈련참여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0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제51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 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대응 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 관할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재난의 복구 지원

제1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제5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6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8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생활안정지원 등

제59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

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9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61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59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62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9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7조 및 제58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3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제6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시 재난예방홍보계획에 따라 구의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난유형별·시기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들이 재난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7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9조(재정지원)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67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부터 제64조의 규정은 2018년 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한 결정,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 (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9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중구청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중구청장이 응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0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0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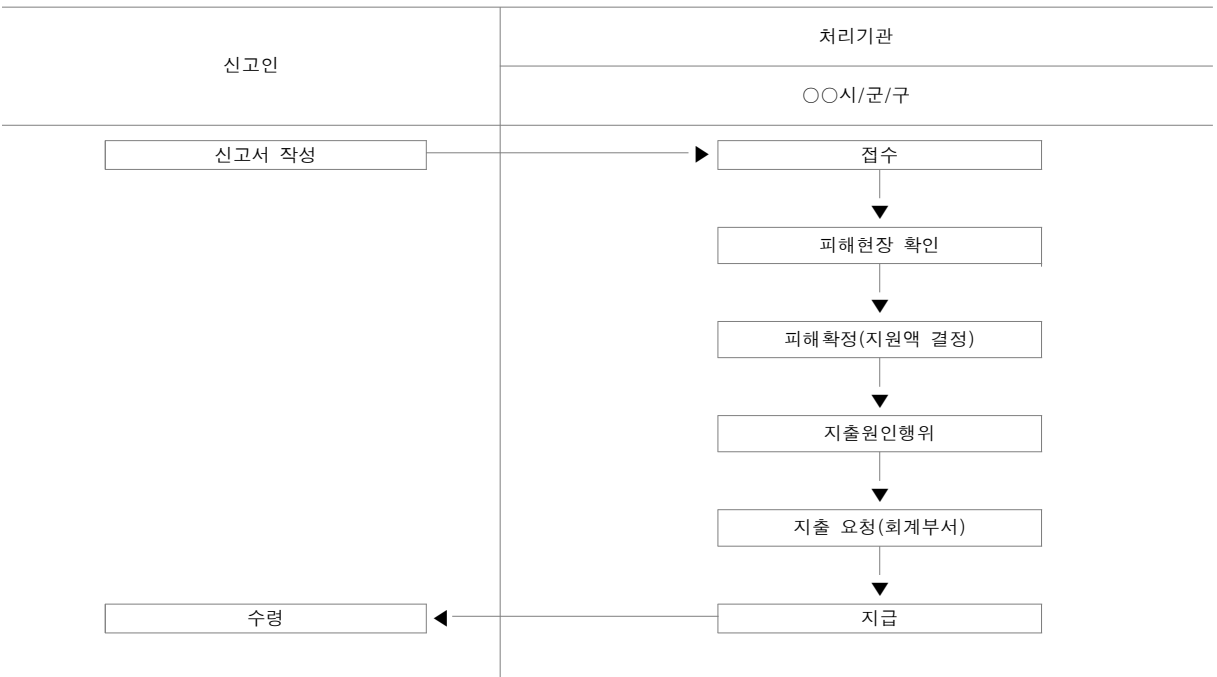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07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실무반 편성(안 제4조)
- 다. 수습 주관부서 지정(안 제5조)
- 라. 사무 전결사항(안 제6조)
- 마.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안전치수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02-3396-6182, FAX: 02-3396-9085, 메일: os102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적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실무반의 편성)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3항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제5조(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수습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별도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4
2. 사회재난 : 별표5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편성 및 지정표의 관리) 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과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성 및 지정표를 비치 관리한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 별표 1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 별표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바) 화상회의 준비·운영 사)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	1) 상황관리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구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군·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2.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전산정보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시장경제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환경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취업지원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도로시설과 - - 도로시설과 - 교통행정과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 -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15.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 지진 · 화산 · 낙뢰 · 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 안전치수과 안전치수과 -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17.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건축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 당 관	통 제 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시·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시·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7조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와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실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안전치수와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중구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중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안전치수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 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2)협업기능반(α)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	· 자치행정과

	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중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서울지방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2)협업기능반(α)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와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치수와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중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서울지방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실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자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중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치수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과, 사회복지과
	2)협업기능반(α)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치수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중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서울지방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	· 청소행정과

	비반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와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치수와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중부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서울지방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 α + β + γ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총괄팀 (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파악팀 (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전산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심재생과, 도로시설과, 안전치수와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치수와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중부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3537부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과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4 및 별표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가.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1) 중구비상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3개 이상의 시·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2단계	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중구 비상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회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